

大田直轄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修正案

議案 番號	482
----------	-----

提出年月日 : 1994. 12. .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1. 修正理由

- 가. '94. 12. 31까지 한시조직으로 運營되던 公營開發事業團의 事業을 한밭開發公社로 引繼하여 推進할 計劃에 따라 資本金 增資, 事業目的 등 事業 推進에 필요한 部分을 改正하고자 하였으나
- 나. 推進過程中서 事業의 連繫性 등 諸般與件이 未洽하여 圓滑한 事業推進과 公社의 授權態勢 準備期間을 위하여 公營 開發 事業團 業務移管時点を 6個月간 延期하고자 하는 것임

2. 修正主要骨子

- 가. 事務引繼引受 前에 資本金 增資 節次, 定款 承認 등의 事前 準備를 위하여 條例施行日을 공포한 날부터 施行하기로 함 (附則 第 1條)
- 나. 公營開發事業團 존치기한이 '95年6月30日까지 延長됨에 따라 住宅事業 및 住宅事業과 그 附帶事業에 관한 權利義務을 '95年 7月 1日부터 承繼하도록 함 (附則 第2 條)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부칙 제1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부칙 제2조중 “1994년 12월 31일”을 “1995년 6월 30일”로 하고,
“1995년 1월 1일”을 “1995년 7월 1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p data-bbox="371 667 643 701">부 칙</p> <p data-bbox="284 775 756 1021"><u>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data-bbox="284 1120 756 1366"><u>제2조 (권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대전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 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 1월 1일부터 승계한다.</u></p>	<p data-bbox="906 667 1177 701">부 칙</p> <p data-bbox="818 775 1307 864"><u>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data-bbox="818 1120 1307 1366"><u>제2조 (권리의무의승계)1995년 6월 30일까지1995년 7월 1일부터</u></p>